

# [재]부산문화재단 직원[무기계약직] 채용 공고

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 문화향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산문화재단은 다음과 같이 함께 일할 직원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2021년 1월

(재)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

## 1 채용분야 및 인원

고용형태	직무분야	인원	주요업무(담당사업 등)
무기계약직	문화행정	1명	◦ 문화예술 기획, 행정, 경영, 국제교류, 위탁시설 관리 등 재단 운영 업무 전반

## 2 응시자격 요건

- 공통사항 ※코로나19 확진자는 응시불가 함.
    -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중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    -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
  - 지원요건: 아래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지원 가능
    - 해당분야(문화행정)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
- ※ 국제교류 사업 등의 직무 수행을 위한 외국어(일본어) 가능자 우대

○ 응시결격사유

- 「(재)부산문화재단 인사규정」 제9조(채용제한연령) 및 제10조(결격사유) 해당자

● 재단 인사규정 제9조(채용제한연령)

직원의 신규채용 하한 연령은 18세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졸업(예정)자 중 조기입학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18세 미만인 자도 해당한다.

● 재단 인사규정 제10조(결격사유)

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4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5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7.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,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8.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
9.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

-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

● 「형법」 제303조(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)

- ① 업무,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

●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(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)

- ① 업무,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,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○ 가산점 부여(법정가점) ※채용전형 전 과정 적용

구분	가점대상	가산비율	비고
법정 가점	1.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	법정비율 (5%~10%)	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
	2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		
	3. 「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		
	4. 「특수임무수행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		
	5. 「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		
	6.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		

※ 취업지원 대상자 합격 30% 상한제 적용

-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수험생이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음. (단,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,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을 제외하고도 합격선 이상인 경우는 제외함.)

○ 가산점 부여(특별가점 및 기타가점)

구분	가점대상	가산비율	적용	비고
특별 가점	7. 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	5%	서류	장애인 증명서
	8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	5%	서류	취업보호 기관의 확인서 등
기타 가점	9. 최종학교(대학원이상 제외)의 주소가 부산광역시인 자	1%	서류	졸업 증명서
	10. 외국어 능력 관련 공인자격(점수)를 소지한 자 ※ 단, 국제교류 등 외국어 사용 직무에 해당되는 채용의 경우에만 한함	1%~3%	전 전형별	관련 증명서

### 3 근무조건

- 근무시간: 주 40시간 근무(09:00 ~ 18:00 기준, 1일 8시간 근무)
- 근무일: 주 5일(월~금)
- 근무지: 부산문화재단(부산 남구 우암로 84-1)
- 보수수준
  - 무기계약직 기본연봉 한계액표 24,255천 원 적용 ※부산시 생활임금 적용
  - ▷ 부가급여 별도(정액급식비, 시간외 근무수당, 맞춤형 복지 등) 단,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
  - ※ 임용일로부터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며,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불량 등 재단 인사규정 제12조 제2항에 해당될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.

### 4 전형일정 및 심사방법

- 전형일정 ▷ **코로나 19 확산추이 및 재단 사정에 의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음.**

구분	일정(안)	진행장소	비고(발표예정 등)
채용공고	2021. 1. 15.(금) ~ 1. 25.(월)	재단 홈페이지 등	온라인 공고
원서접수	2021. 1. 20.(수) ~ 1. 25.(월)	사람인 채용 관리 시스템	온라인 접수 1. 25.(16:00) 마감
1차(서류전형)	2021. 1. 28.(목)	부산문화재단	2021. 1. 29.(금)
2차(필기전형)	2021. 2. 3.(수)	부산문화재단	2021. 2. 5.(금)
3차(면접전형)	2021. 2. 9.(화)	부산문화재단	2021. 2. 17.(수)

- 1차 서류전형 ▷ 5~10배수 선정
  - 직무수행에 필요한 응시자의 자격요건 및 제출한 구비서류를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필기시험 응시 대상자를 결정
  - ※ 단, 지원자 수가 적을 경우(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미만) 지원자에 대한 적격여부는 서류전형 산술평균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하며,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공고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- 2차 필기시험 ▷ 3~5배수 선정
  -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업무영역 및 관련분야 주제의 논술시험 실시,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 후 면접심사 대상자 결정

○ 면접심사

-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사기준에 의하여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선정

※ 예비합격자: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내

○ 최종합격자: 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회에 이상이 없는 자로 결정

○ 임용예정일: 2021. 2. 22. (월) 예정

## 5 심사기준

NO	구분	심사항목	비고
1	서류전형	자기소개(30), 교육사항(20), 경력사항(20), 적합성(30)	1차
2	필기시험	이해·분석력(20), 논증력(20), 체계성(20), 창의력(20), 표현력(20)	2차
3	면접심사	전문성(30), 재단 이해도(30), 재단 인재상(40)	3차

## 6 제출서류

○ 공통 제출사항(필수 제출)

- 입사지원서, 자기소개서, 개인정보동의서 제출

○ 서류합격자 제출사항(필기시험 당일 제출)

NO	제출서류	세부내용	비고
1	학위증서 (졸업증명서)	- 대학교(전문학사) 이상은 모두 제출 - 석·박사의 경우 학위논문 초록 사본 제출 (외국학위의 경우 국문 요약본 포함)	해당자 한함
2	경력 및 재직 증명서	- 근무기간, 직위, 직급, 담당업무 등 정확하게 기재 (발급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포함) - 폐업 등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건강보험, 국민연금 납부증명으로 대체 가능	해당자 한함
3	교육 사항 증명서	- 학교교육 증명서(과목명, 교육과정, 교육기관명 등) - 직업훈련(과목명, 교육과정, 교육기관명 등)	해당자 한함
4	기 타	- 가점대상의 증명서 및 확인서 - 어학성적표	해당자 한함

※ 각종 증명서 및 자격증 등은 사본으로 제출 후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원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## 7 응시원서 접수

- 공고기간: 2021. 1. 15.(금) ~ 1. 25.(월) 16:00 까지
- 접수기간: 2021. 1. 20.(수) ~ 1. 25.(월) 16:00 까지
- 접 수 처: 부산문화재단 채용 전자시스템(<http://bscf.saramin.co.kr>) 원서 접수
  - ※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는 불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  - ※ 접수처(부산문화재단 채용 전자시스템)에서는 응시원서 접수만 진행하고, 전형별 결과 등 안내사항은 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합격자 대상 개별 안내드립니다.
  - ※ 접수마감일(2021. 1. 25.) 16:00까지 접수 가능

## 8 유의사항

-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서 서류전형, 필기시험, 면접시험 등 채용절차 과정에서 응시자격 기준을 제외한 학력, 연령, 출신지, 신체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으며,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내용을 자기소개서 및 응시원서 상에 기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- 응시원서에 기재되는 경력, 자격사항 등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(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, 증빙자료 없을 경우 불인정)
-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경력증명서, 근무실적 등)의 경우,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 받아 제출바랍니다.(미제출시 불인정)
- 제출된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, 연락불능, 미제출서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으며, 응시자의 임용 결격 사유가 있거나 부정합격이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.
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하여 제출된 서류 원본은 채용절차 종료 후 개별 요청 시 반환이 가능하고, 채용전형이 종료된 이후(최종합격자 발표일)로부터 30일까지 보유하며 청구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는 파기 조치합니다.
  - 반환청구기간: 채용전형 종료 후 30일 이내
  - 청구방법: 채용서류 반환청구서\*를 작성 후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및 스캔하여 메일 제출([aktw5555@bscf.or.kr](mailto:aktw5555@bscf.or.kr))
- 공개채용에 따른 불필요한 업무공백, 경비지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, 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합격자 순번에 따라 별도 임용할 수 있습니다.
-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에는 해당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([www.bscf.or.kr](http://www.bscf.or.kr))에 공고합니다.
- 전형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부산문화재단 경영지원팀(☎051-745-7212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**※ 코로나19 확산 방지(생활 속 거리두기 준수) 및 지방 공공기관 채용 시험 관리 지침에 의거 한 적절한 대응 조치 실시 예정으로,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시험장소, 일정 등이 변동될 수 있으며, 관련사항은 해당자 개별 안내하겠습니다.**

-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별지 제3호서식]

## 채용서류 반환청구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
청구인	성명	수험번호
주소		
반환장소 (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)		
반환청구서류		
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 (서명 또는 인)

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

### 공지사항
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,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